

##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고문변호사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2004년 1월 17일(충청북도교육감)
- 나. 회부일자 : 2004년 1월 26일
- 다. 상정일자 : 2004년 2월 2일(제3차교육사회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안이유

- 교육위원의 교육의정활동 과정에서 올바른 법령해석과 각종의안 심사시 법률적 자문을 통하여 보다 심도있는 심사함
- 교육위원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 등을 대비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위촉기간은 2년이며, 대상인원은 2명이내서 의장이 위촉함
- 예산의 범위내에서 고문변호사에게 수당을 지급
- 사건처리부를 비치하여 자문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는 내용 등입니다.

### 3. 검토보고요지(전문위원 임석규)

- 금번 제출된 동 조례안은 교육위원의 교육의정활동 과정에서 올바른 법령해석과 각종의안 심사시 법률적 자문을 통하여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기존에 교육·학예 등에 관한 법령해석과 자문에 대하여는 어떻게 운영해 왔는가와 그 규정(규칙, 훈령)의 제정여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첨부서류 : 없음

-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고문번호사조례안

##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0
----------	-----

제출년월일 : 2004. . .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 개정이유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성 영 용 교육위원외 4명발의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9조로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개정 (2003. 7. 18, 법률 제6927호) 및 동법시행령 개정 (2003. 12. 18, 대통령령 제18161호)으로 교육위원에 대한 명예직 규정이 삭제되어
- 교육위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지급의 근거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교육위원에 대한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및 보조활동비를 월 70만원 및 20만원에서, 각각 월 120만원 및 30만원으로 조정함. (안 제6조)
- 교육위원에게 지급되는 국내외 여비를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상금액을 반영하고자 함. (안 제8조 별표 1 및 별표 2)

## □ 개정안 : 붙임과 같음

## □ 참고사항

## ○ 관계규정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9조 및 같은법률시행령 제14조
-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현행조례)

## ○ 예산조치사항 :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 충청북도조례 제 호

##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월 700,000원”을 “월 1,200,000원”으로 “월 200,000원”을 “월 300,000원”으로 한다.

[별표 1]중 숙박비(1야당)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숙박비(1일당)
46,000
46,000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국외여비지급기준표(제8조제2항관련)

(단위 : 미불화)

구분 \ 지급 기준	항공임	일 비	숙박비	식비	준 비 금		
					15일미만	15일이상 30일미만	30일이상
의 부 의 장	1등정액	40	205	133	150	180	210
교육위원	1등정액	35	166	107	140	170	195

비고 : 1. 여행지역의 거리 및 현지물가 등을 감안하여 여비지급기준 범위안에서 의장이 정하여 지급한다.

2. 지방자치법시행령 또는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으로 국외여비지급기준이 조정된 때에는 이 표를 개정하기 전이라도 지방자치법시행령 또는 공무원 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의정활동비 지급 기준) 위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700,000원과 보조활동비 월 200,000원으로 하고 매월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6조(의정활동비 지급 기준) ----- ----- ----- 월 1,200,000원 ----- ----- 월 300,000원 ----- -----						
[별표 1] 국내여비지급기준표(제8조제1항관련) (단위:원)	[별표 1] 국내여비지급기준표(제8조제1항관련) (단위:원)						
<table border="1"> <tr><td>숙박비(1야당)</td></tr> <tr><td>41,000</td></tr> <tr><td>41,000</td></tr> </table>	숙박비(1야당)	41,000	41,000	<table border="1"> <tr><td>숙박비(1일당)</td></tr> <tr><td>46,000</td></tr> <tr><td>46,000</td></tr> </table>	숙박비(1일당)	46,000	46,000
숙박비(1야당)							
41,000							
41,000							
숙박비(1일당)							
46,000							
46,000							
[별표 2] 국외여비지급기준표(제8조제2항관련) (단위:미분화)	[별표 2] 국외여비지급기준표(제8조제2항관련) (단위:미분화)						
(생략)	아래 국외여비지급기준표와 같음						

## 국외여비지급기준표(제8조 제2항 관련)

(단위 : 미분화)

구분	지급기준	항공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		
						15일미만	15일이상 30일미만	30일이상
의정부의장	장차	1등정액	40	205	133	150	180	210
교육위원		1등정액	35	166	107	140	170	195

비고 : 1. 여행지역의 거리 및 현지물가 등을 감안하여 여비지급기준 범위안에서의 장이 정하여 지급한다.

2. 지방자치법시행령 또는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으로 국외여비지급기준이 조정된 때에는 이 표를 개정하기 전이라도 지방자치법시행령 또는 공무원 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